##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97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복기왕·정성호·문진석

정준호 · 맹성규 · 채현일

박용갑 • 이연희 • 염태영

장철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산출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사이에 큰 괴리로 인하여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와 달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검증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간의 괴리를 줄이고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을 "작성기준·작성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검증의 방법·절차는"으로 한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제1항제 2호의2의 사항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 ③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8
	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
	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
	기구에 제1항제2호의2의 사항
	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
	<u>다.</u>
④ 정비계획의 <u>작성기준 및 작</u>	<u>⑤</u> 작성기준·작성
<u>성방법은</u>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검증의
하여 고시한다.	<u>방법•절차는</u>